

학생 봉사활동 이것이 궁금해요 (100문100답)

2021. 2.

목 차

I. 학생봉사활동

1.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단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1
3. 봉사활동실적이 의심되는데도 확인서만 보고 그대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나요? 2
4. 학생봉사활동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6
5.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일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나요? 3
6.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 시간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3
7. 담임(담당)교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에 관하여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4
8.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봉사활동도 왜 봉사활동확인서를 만들어서 결재 받아야 하나요? ... 4
9. 봉사활동에서 1시간은 몇 분을 의미하나요? 5
10. 봉사활동 확인서의 확인란에 해당 기관(단체)의 직인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담당자의 확인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5
11.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해당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은 인정이 가능한가요? 6

II.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가. 정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12. 봉사활동 평가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7
13.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에 여러 가지 사유(경조사, 천재지변, 출석인정, 질병, 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로 불참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7
14.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중 학생봉사활동을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내용으로 편성이 가능한가요? 8
15. 동아리활동 부서에서 동아리활동 시간에 실시한 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8
16. 징계 관련 학생 선도 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9

나. 수업시간외 교내 봉사활동

17. 학교행사(체육대회, 축제, 소풍, 수학여행 등의 현장 체험학습) 후의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해도 되나요? 10
18.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으로 발급 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생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10
19. 자치회의, 자치법정 등 각종 회의 참석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11
20.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 축제, 체육대회 행사 준비를 위해 활동한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11
2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관(단체)에서 교외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하여야 하나요? 12

Ⅲ.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가. 봉사활동 기관

22. 아파트관리사무소, 부녀회, 경로당 등에서 실시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 13
23. 사설기관(단체)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할 수 있나요? 13
24. 종교 단체에서의 활동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14
25. 사설 어린이집 또는 사설 유치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인정할 수 있나요? 14
26. 병원(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 주간간보호센터 등 포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15
27. 학생이 개인 또는 모둠으로 봉사활동을 프로젝트로 기획한 경우 학생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5
28. 번역 봉사가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려면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16
29. 각종 협회(체육, 문화, 예술 등)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16
30. 학교 외의 장소(지역 공부방 등)에서 학습 멘토로 활동하였을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17
31. 작은 도서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학생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17
32. 소규모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실시한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18
33. 공익목적의 베품시장에서 활동한 내용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18
34.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의 봉사 가능한 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9
35.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20
36.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을 개인별 확인서가 아닌 공문으로 발송한 경우 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20
37. 위탁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인정해야 하나요? 21
38. 초·중·고·대학교(사립학교 포함)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21

나. 봉사활동 내용

39. 부적절하게 인정될 수 있는 학생봉사활동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2
40.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23
41.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전 사전교육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23
42. 평일 체험학습(출석인정)으로 공공기관(교육기관)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24
43.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끝난 후(봄방학)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는 인정할 수 있나요? 24
44.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실적을 인정할 수 있나요? 25
45. 설문조사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25
46. 실적연계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활동도 학생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26
47. 모발 기증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26
48. 해외 봉사 가기 전 국내에서 사전 봉사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국내 활동(교육)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27
49. 헌혈 활동의 경우도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27
50. 중학생도 헌혈 봉사가 가능하나요? 28
51. 6교시 이후에 헌혈차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이 헌혈을 하였을 경우 인정 가능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28
52. 봉사활동 후 실비보상(교통비 8천원 등)이 있는 활동을 학생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29
53. 온라인 활동(사이버 홍보단 등)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29

다. 봉사인정 시간

54. 학생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권장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나요? 30
55. 기말고사 기간에 시간표는 4시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개인계획에 의한 3시간 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있나요? 30
56. 평일 수업시수가 7교시인데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확인서 봉사시간이 2시간인 경우 2시간 모두 인정할 수 있나요? 31
57. 미인정결석 기간 중 휴일(토·일요일)에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가요? 31

Ⅳ.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58. 해외 봉사활동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나요? 32
59. 봉사활동실적 시간 기재에서 분 단위의 기록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32

60.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VMS)에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 중 봉사활동 기관(단체)이나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예: 영역-기타, 기관-연계기관 또는 관리센터로 기재됨)	33
61. 이전 학년도의 봉사활동 실적을 정정할 수 있나요?	33
62. 학생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보관은 언제까지 인가요?	34
63. 학생의 봉사활동 내역 나이스 입력 시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영역 중 이웃 돕기 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중 가장 유사한 영역으로 넣어도 되나요? ..	34
64. 한국학교(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이 가능한가요?	35
65. 한 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봉사활동은 나이스 반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35
66.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VMS에서 봉사 프로그램을 신청 활동 후 나이스로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여야 하는 경우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36
67. 전출입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는 어느 학교에서 보관하여야 하나요? ..	36
6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학교'와 '개인' 활동은 어떻게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나요? ..	37
69. 교육계획에 의한 사전 봉사교육은 어떤 봉사활동 영역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	37
70. 헌혈 실적 입력 시 전혈, 성분헌혈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하나요?	38
71.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과 봉사활동 내용은 몇 자까지 적을 수 있나요?	38
72. 실적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39

V. 부 록

1. 『1365 자원봉사포털』 자주 묻는 질문

1. 봉사활동을 했는데 실적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
2. 아이디가 여러 개인 경우 하나로 합칠 수 있나요?	40
3. 개명을 해서 이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
4. 봉사참여 신청을 했는데 계속 접수 중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41
5. 연계결과가 나눔포털연계 미동의 또는 주민등록번호 불일치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2
6. 작년 봉사활동 나이스(NEIS) 연계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	42
7.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연락처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43

2. VMS 자주 묻는 질문

1. VMS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44
2. 회원정보를 검색하여 아이디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5
3. VMS에서의 실적 출력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5

4.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인증 칸에 하나로 합칠 수 있나요?	46
5. 개명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46
6. 영문 증명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7
7. 회원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47

2. Dovol[두볼] 자주 묻는 질문

가. Dovol[두볼] 관련 문의

1. 봉사활동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2.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신청내역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처리가 되나요?	48
3. 봉사활동 신청 가능 개수가 3개인데 저는 2개 밖에 신청이 안 됩니다. 신청 개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9
4. 봉사활동 신청 후 참여하지 않아 삼진아웃에 걸려 봉사활동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풀리나요?	49
5. 봉사활동을 신청하려는데 학교급(초,중,고,대,학교밖)이 일치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50
6. 로그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50
7. e청소년을 장기간 미사용 했더니 휴면상태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제 할 수 있나요? ..	51
8. 회원 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제가 다니는 학교가 검색이 안 됩니다. 학교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1
9.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무엇인가요?	52
10. 활동터전에서 하는 봉사활동과 동아리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52

나. 실적 연계 문의

11. 1365 자원봉사포털로 Dovol(두볼)의 실적을 전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3
12. 저는 Dovol(두볼)만 사용하는데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를 하려면 1365 자원봉사포털에도 가입을 해야 하나요?	53
13. 오래 전에 연계 동의하였는데도 계속해서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계 확인이 가능한가요?	54
14. Dovol(두볼)과 1365 자원봉사포털을 연계하여 나이스(NEIS)로 바로 넘어가나요? ..	55
15. Dovol(두볼)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 결과에 '수신'과 '전송불가'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55
16. 오늘이 학교에서 봉사활동 실적 등록 마감인데 1365 자원봉사포털로 봉사활동 실적 전송을 바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56
17. 봉사활동 실적 중 일부는 1365 자원봉사포털로 '전송성공'인데, 일부는 '미전송'입니다. 오류 사유는 무엇인가요?	56

4. 각종 서식

- 1. 【부록】 학생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인정기준(예시) 57
- 2. 각종 서식 59

I. 학생봉사활동이란?

Q 1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학생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됩니다.
- 학생봉사활동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1. 학생의 봉사활동의 취지와 규정(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단위학교 계획, 안전 등)에 부합되고
 2. 인정 가능한 기관(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Q 2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단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단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2.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3.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입니다.
- ※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의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합니다.

Q A 3 봉사활동실적이 의심되는데도 확인서만 보고 그대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나요?

○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실적이 의심되는 경우는 담임교사 또는 봉사활동 담당교사가 해당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가 어려울 경우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학생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도를 해야 합니다.

Q A 4 학생봉사활동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은 얼마인가요?

○ 하루 8시간 이내로 인정합니다.
 평일은 수업시간에 따라 수업이 7교시면 1시간, 수업이 6교시면 2시간, 수업이 5교시면 3시간, 수업이 4교시면 4시간 인정, 휴업일(토요일,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인 경우에는 8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행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한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Q A 5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일 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예시나 기준이 없어 봉사활동 인정이 어려울 경우에 판단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침을 위반하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Q A 6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 시간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위한 왕복 이동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가능합니다.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및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x	x	○					x	x	x	x

Q A 7 담임(담당)교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에 관하여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학교 내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학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봉사활동과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자율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의 결재는 학교별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한 결재를 할 수 있으며
 - 봉사활동확인서의 양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Q A 8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봉사활동도 왜 봉사활동확인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봉사활동을 최종 기록하기 위해서는 계획에 대한 승인과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은 계획에 대한 승인이며, 결석한 날은 누가기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출석부(출석상황) 등은 직접적인 봉사활동 확인서류가 아니며 관련 서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기록을 위해 봉사 결과에 대한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Q A 9 봉사활동에서 1시간은 몇 분을 의미하나요?

- 봉사활동 시간 계산을 할 때 1시간은 정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으로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외 수업시간의 교내 봉사활동, 교외 봉사활동은 60분을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Q A 10 봉사활동 확인서의 확인란에 해당 기관(단체)의 직인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담당자의 확인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봉사활동 확인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기관(단체)의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봉사활동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무담당자의 실인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무담당자의 실인으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 후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을 추가 날인하여 조치합니다.

Q A 11

신입생의 입학 전(해당 학년도 3월1일~입학식 전)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해당학년도 졸업식 이후~2월말) 봉사활동은 인정이 가능한가요?

○ 인정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6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식 이전,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입학식 이전과 졸업식 이후의 학교장 승인 관련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II.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가. 정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Q A 12

봉사활동 평가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은 계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봉사학습 과정으로서의 활동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실행 후 활동 소감을 발표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기 활동에 대한 환류를 위한 평가활동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Q A 13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에 여러 가지 사유(경조사, 천재지변, 출석인정, 질병, 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로 불참하였을 경우, 해당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에 불참한 학생의 출결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하는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합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기간 중 봉사활동이 실시되었을 때, 학교에 등교한 경우, 출석은 인정하지만 봉사활동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Q A 14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중 학생봉사활동을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내용으로 편성이 가능한가요?

- 편성 가능합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학교 봉사활동 계획에 의해 실시된 활동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Q A 16 징계 관련 학생 선도 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학생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보호처분 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Q A 15 동아리활동 부서에서 동아리활동 시간에 실시한 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자율동아리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율동아리활동 활동계획에 명시된 활동 이외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합니다.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율동아리 포함)

나. 수업시간의 교내 봉사활동

Q A 17

학교행사(체육대회, 축제, 소풍과 수학여행 등의 현장 체험학습) 후의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인정해도 되나요?

- 학교행사 계획에 봉사활동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교육과정 상 봉사활동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봉사활동)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시하였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단, 학교행사 후 단순 자기 주변 정리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A 18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으로 발급 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한 학생 봉사활동은 인정됩니다. 다만,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된 경우 청소년단체 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Q A 19

자치회의, 자치법정 등 각종 회의 참석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 참석 등은 인정할 수 없으며, 모의의회, 토론회, 자치법정 등은 자율활동 영역 중 자치활동에 해당합니다.

Q A 20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 축제, 체육대회 행사 준비를 위해 활동한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행사에서의 봉사 프로그램을 연간 봉사활동 계획으로 수립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에는 구체적인 활동 시간과 활동 내용, 모집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른 영역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Q A 2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단체)에서 교외 봉사 활동을 실시한 경우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하여야 하나요?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은 해당 봉사활동을 주관한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관하고 장소가 교외인 봉사활동 확인서는 학교장이 발급을 하고,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지만 주관기관이 학교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Ⅲ.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가. 봉사활동 기관

Q A 22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경로당 등에서 실시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영리기관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부녀회와 노인정 등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이 비영리기관(단체)이며,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활동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A 23

사설기관(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 사설기관(단체)의 봉사활동도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설기관(단체)이 비영리기관(단체)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만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회사, 마트, 카페 등)에서 실시하는 활동(봉사활동 포함)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A 24 종교 단체에서의 활동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비종교성에 따라 종교 단체(교회나 사찰 등)에서 자신의 신앙 생활의 일부로 실시하는 활동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종교 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A 25 사설 어린이집 또는 사설 유치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인정할 수 있나요?

-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어린이집의 봉사활동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인정할 수 없음)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에 의한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인정합니다.

Q A 26 병원(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포함)에서 실시한 봉사 활동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병원에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병원 내에서 봉사활동을 관리하는 병원)
- 노인요양병원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가능하며, 개인병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노인요양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 전반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보유한 시설만 인정합니다.
- 봉사활동이 가능한 병원이라 할지라도 활동 내용, 안전 등이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합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학생봉사활동으로 적합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 안내, 환자 위문 활동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맞는 활동은 인정 가능)

Q A 27 학생이 개인 또는 모둠으로 봉사활동을 프로젝트로 기획한 경우 학생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수업시간외 봉사활동으로 개인 또는 모둠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 하에 운영되었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학생 주도 봉사활동 길잡이(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A 28 번역 봉사가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되려면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당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 요청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합니다.
- 번역료 등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A 29 각종 협회(체육, 문화, 예술 등)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 비영리법인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협회 회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봉사 활동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행사 등에 단순 참여가 아닌, 행사를 지원하는 활동 등 봉사활동 취지에 맞는 활동이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속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사 등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A 30 학교 외의 장소(지역 공부방 등)에서 학습 멘토로 활동하였을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비영리 공부방(지방자치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등에서 활동한 학습 멘토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 공부방(독서실 등)은 인정할 수 없음)

Q A 31 작은 도서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작은도서관으로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약칭:작은도서관법) [시행 2016. 5. 4.] [법률 제13973호, 2016. 2. 3., 일부개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Q A 32 소규모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실시한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한하여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적합한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A 33 공익목적의 벼룩시장에서 활동한 내용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공익을 목적으로 실시한 벼룩시장에서 질서유지, 행사 보조 등 운영에 참여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으며, 물건을 사는 등의 단순 참여활동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물품기부, 기부금 지원 등을 전제로 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벼룩시장에 판매할 물건을 기부해야만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판매물품을 가지고 와 판매 후 수익금을 기부한 것 등)

Q A 34 장애인 복지 관련 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이 있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인정되는 기관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Q A 35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활동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실시한 활동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음)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업조직인 협동조합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 구분하여 봉사활동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5호, 2017. 8.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Q A 36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을 개인별 확인서가 아닌 공문으로 발송한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단체장)의 직인을 받아 발급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문 자체가 기관장(단체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A 37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나요?

- 위탁기관에서 보내 온 각종 비교과 영역은 위탁교(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 실적도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Q A 38 초·중·고·대학교(사립학교 포함)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대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사전 계획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공개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나. 봉사활동 내용

Q A 39 부적절하게 인정될 수 있는 학생봉사활동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부적절하게 인정된 학생 봉사활동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모임
 - ②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③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 ④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⑤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⑥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 ⑦ 인구조사 참여
 - ⑧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 ⑨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 ⑩ 운동경기 · 공연 관람
 - ⑪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 ⑫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예: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
 - ⑬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예: 자치회의, 자치법정, 모의의회, 토론회, 학생기자활동, 평가단 등)
 - ⑭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단,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사전 안전교육 등)은 인정 가능)

Q A 40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단순 기부활동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봉사활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프로그램 계획안 등)가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을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시간만을 인정합니다.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기부금 형태, 교통비 ·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한 형태)

Q A 41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전 사전교육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사전교육 내용이 실제 봉사활동이 직접 연결될 때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행이 중점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과도한 사전 교육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Q A 42

평일 체험학습(출석인정)으로 공공기관(교육기관)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수업시수로 반영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일 수업이 6교시인 경우는 2시간, 7교시인 경우는 1시간 등과 같이 인정할 수 있음).

Q A 43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끝난 후(학년 말 방학)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인정할 수 있나요?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이므로 봄방학 등의 학년말 학생봉사활동 실적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 학년도에 기재가 가능하면 기재하고, 해당 학년도에 기재할 수 없을 경우는 다음 학년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는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VMS, Dovol 등에서 출력한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의미합니다.

Q A 44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실적을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 형태,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금품)의 많고 적음과도 관계없음).

Q A 45

설문조사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단순 설문조사 참여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A 46

실적연계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활동도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실적연계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DOVOL(www.youth.go.kr), VMS(www.vms.or.kr))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의 경우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당해 연도 시도 교육청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른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물품이나 재료 구입 후 무엇을 제작하여 기부하는 활동, 활동비·후원금·기부금 등 금품을 납부하고 참여하는 활동, 단순 체험·관람 프로그램,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 등 학생 봉사활동의 취지와 규정에 어긋나는 활동은 실적연계사이트를 통해 나이스 전송 되었을지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적연계사이트 이용 시 사전에 담임(담당)교사 등과 지도 및 상담을 통하여 봉사활동 실적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를 해야 합니다.

Q A 47

모발 기증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A 48

해외 봉사 가기 전 국내에서 사전 봉사교육을 실시하였다면, 국내 활동(교육)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과 활동 등은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A 49

헌혈 활동의 경우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 헌혈 활동 후 발급되는 확인서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헌혈의 경우는 학부모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 학교 외(헌혈의 집, 헌혈카페 등)에서 학생이 헌혈 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학부모의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위 학교의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사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A 50 중학생도 헌혈 봉사가 가능하나요?

- 헌혈은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전혈과 성분헌혈 모두 포함하여 연 3회의 범위 내에서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헌혈은 1회당 4시간 봉사활동으로 인정됩니다.

Q A 51 6교시 이후에 헌혈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이 헌혈을 하였을 경우 인정 가능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 헌혈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학생 봉사활동 시간제한(1일 8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며, 4시간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A 52 봉사활동 실비보상(교통비 8천원 등)이 있는 활동을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봉사활동 중 식사를 제공 받은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식비를 받은 경우는 인정할 수 없음)

Q A 53 온라인 활동(사이버 홍보단 등)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활동을 했을 경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선플 달기
 -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 작성 시 최대 12시간 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 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다. 봉사인정 시간

Q A 54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인정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나요?

-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인정 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봉사활동 계획 수립 및 실천에 참고용으로 사용합니다.
- 학생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시간은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의 발육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시간 인정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권장 시간 이내 실시하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 후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Q A 55 기말고사 기간에 시간표가 4시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3시간 봉사시간을 인정할 수 있나요?

- 학생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수업과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간표(나이스 출결 시수)에 4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오후에 실시한 개인계획에 의한 3시간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A 56 평일 수업시수가 7교시인데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확인서 봉사 시간이 2시간인 경우 2시간 모두 인정할 수 있나요?

- 2시간 중 1시간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의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이므로 1시간으로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Q A 57 미인정결석 기간 중 휴업일(토·일요일 등)에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가요?

-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미인정결석 기간 중이라도 휴업일(토·일요일 등)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IV.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Q 58 해외 봉사활동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나요?

- 기재할 수 없습니다. 해외 봉사활동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Q 59 봉사활동실적 시간 기재에서 분 단위의 기록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봉사활동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분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합니다. 단,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에 합산 가능합니다.

예) 1. 2020.3.22. ○○도서관 서가 정리 2시간 30분으로 연계되었을 때
2020.3.22. (개인)○○도서관 서가 정리 2시간으로 입력

2. 2020.5.23. 환경보전협회 환경기본교육. 환경봉사활동 3시간 40분
2020.5.24. 환경보전협회 하천 정화활동 및 수생식물식재활동 2시간 30분으로 연계되었을 때는,
2020.5.23. ~ 2020.5.24. (개인)환경보전협회 환경기본교육, 환경봉사활동(하천 정화활동 및 수생식물 식재활동 등) 6시간으로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Q 60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VMS)에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 중 봉사활동 기관(단체)이나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영역-기타, 기관-연계기관 또는 관리센터로 기재됨)

-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DOVOL, VMS)에서 전송된 원본자료는 수정할 수 없으나, 자료 확인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때 (담임)교사가 수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후 내용을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Q 61 이전 학년도의 봉사활동 실적을 정정할 수 있나요?

- 객관적인 증빙자료(봉사활동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자료의 정정에 따름

Q A 62 학생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보관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학기 중에는 학급담임이 보관하다가 학년말에 담당부서에서 수합하여 보관합니다. 보관기간은 시도교육청의 “기록관리 기준표”에 따릅니다. 단위과제카드 (학생봉사활동)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확인서도 이에 따릅니다.

Q A 63 학생의 봉사활동 내역을 나이스 입력 시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영역 중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중 가장 유사한 영역으로 넣어도 되나요?

- 영역의 판단이 모호할 경우 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가장 유사한 영역을 정합니다.

Q A 64 한국학교(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한가요?

- 전출과 전입으로 처리하는 한국학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합니다.
 - 한국학교 현황은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한국학교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미인정 유학으로 한국학교 재학을 하였거나 한국학교 재학이 아닌 해외 거주시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한국학교 재학은 전출·전입으로 처리하지 않음.

Q A 65 한 시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봉사활동은 나이스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 연계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는 10분, 5분단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므로 1시간미만의 실적이 연계될 수 있으나, 나이스에서는 1시간미만의 경우 입력되지 않습니다
-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 단 동일 기관의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합니다.

Q A 66 1365 자원봉사포털 또는 VMS에서 봉사 프로그램을 신청 활동 후 나이스로 연계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야 하는 경우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계획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은 실적 연계의 일련의 과정(신청→실행→전송→반영)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실적 연계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 시 학생에게 실적을 전송하여 연계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여 실적 연계(신청→실행→전송→반영)를 통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실적 연계 사이트의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물을 제출하는 경우(계획서 제출 생략)
 - 실적 연계 사이트의 전송이 실패한 경우 : 전송 실패 확인
 - 실적 연계 사이트 전송 후 봉사활동 내용 수정하여 재전송하여야 하는 경우 : 재전송 불가
 - 학년도가 경과하여 과거 학년도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송 불가

Q A 67 전출입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는 어느 학교에서 보관하여야 하나요?

- 전출 시에는 전출일 현재까지의 활동 내용과 실적 자료를 전입교로 전송(송부)하고 입력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합니다.

Q A 6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학교'와 '개인'활동은 어떻게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나요?

- 봉사활동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 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합니다.
봉사활동 계획의 주체와 확인서 발급의 주체가 학교라면 '학교'로 입력합니다.

Q A 69 교육계획에 의한 사전 봉사교육은 어떤 봉사활동 영역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 사전교육 이후 실시된 관련 봉사활동의 영역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중 선택하여 입력하며, 선택이 애매한 경우 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만약, 사전교육 이후 관련 봉사활동이 없다면 사전교육은 '캠페인활동'으로 입력합니다.

Q A 70 헌혈 실적 입력 시 전혈, 성분헌혈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하나요?

- 전혈, 성분헌혈 모두 동일하게 헌혈로 적용되므로 구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Q A 72 실적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 봉사활동 확인서의 활동내용에 오타, 맞춤법 오류, 글자 깨짐(, ', >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 안 되는 내용, 활동 내용이 아닌 내용, 특정 행사명 등은 담임교사가 사실관계 확인 후 수정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Q A 71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과 봉사활동내용은 몇 자까지 적을 수 있나요?

- 개별 봉사활동마다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은 학교/개인 구분 포함 30자, 봉사활동 내용은 250자까지 기재가 가능합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 자주 묻는 질문

□ 1365 자원봉사포털 관련 문의

Q A 1 봉사활동을 했는데 실적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봉사활동한 수요처에서 실적 등록 후 지역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 승인 처리까지 완료되어야 봉사자의 실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한 수요처로 문의하여 실적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A 2 아이디가 여러 개인 경우 하나로 합칠 수 있나요?

- 소속 지역자원봉사센터로 전화하여 아이디 통합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역자원봉사센터 연락처는 홈페이지 하단의 “문의전화 안내” 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A 3 개명을 해서 이름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명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지역자원봉사센터 담당자가 개명확인서 또는 관계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확인한 후 회원정보(성명)를 변경 처리해드립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지역자원봉사센터에 팩스로 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등본 등의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 확인과정을 거친 후 수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A 4 봉사참여 신청을 했는데 계속 접수 중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신청이 됩니다.
봉사참여를 신청한 수요처 또는 소속 지역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자원봉사센터 연락처는 홈페이지 하단의 “문의전화안내” 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A 5 연계결과가 나눔포털연계 미동의 또는 주민등록번호 불일치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나의 자원봉사-회원정보관리-자원봉사활동 부가정보” 메뉴에서 봉사실적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항목에 동의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와 보안문자를 입력하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동의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된다면 “나의 자원봉사-회원정보관리-자원봉사활동 부가정보” 메뉴에서 “정보제공 재동의 하기” 버튼을 통해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실명인증 및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 7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연락처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 1365 자원봉사포털에 접속 후 하단의 “문의전화 안내” 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A 6 작년 봉사활동 실적이 나이스(NEIS) 연계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 나이스 연계는 당해 학년도 실적(3월~ 차년 2월)만 조회 및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전 학년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봉사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현재 학년 교사에게 인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VMS 자주 묻는 질문

Q A 1 VMS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VMS는 Volunteer Management System 의 약자로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으로 1978년 ‘사회봉사안내소(도움의 전화)’를 시작으로 전국 14,051 개소 사회복지시설·기관 및 단체에서 816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8.12 기준)
- VMS 봉사활동 유형
 - 재가봉사 : 복지소외계층 등 수혜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생활지원, 교육지원, 정서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시설봉사 : 복지관, 생활시설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생활지원, 교육지원, 정서지원, 사회활동지원, 여가선용, 취업지원, 업무보조, 시설정비, 각종 행사보조 등)
 - 전문봉사 : 기술, 기능 등 전문적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봉사서비스 제공 (전문상담, 의료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외국어지원 등)
 - 지역사회봉사 :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는 봉사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개선, 환경보호, 교통편익증진, 예술, 문화, 생활체육, 민원안내, 행정지원, 시민운동 및 조직 활동 등)
 - 해외봉사 : 동남아, 아프리카 등 최빈개도국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내에서 봉사서비스 제공 (교육·문화 분야, 기술 분야, 농림·수산분야, 보건·의료분야 등)
- 학생 봉사활동 유의사항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기준은 각기 상이하므로 봉사활동 참여 및 실적 인증시 사전 확인 필요
 - ※ 봉사활동 참여 시 본인 확인 등을 위한 학생증 등 지참 필수

Q A 2 회원정보를 검색하여 아이디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이디 패스워드는 홈페이지 내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시 성명/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만일 성명 기재 오류로 회원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컴퓨터 이용에 제한이 되시는 분에 한하여 메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한 신분증/여권 등의 자료를 vms@ssmkorea.or.kr 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09:00~18:00 업무시간 내)
- 아이디 변경의 경우 실적등록을 위해 기관에서 임의 등록한 연번(숫자) 아이디만 1회에 한해서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신 경우 아이디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 3 VMS에서의 실적 출력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적인증서는 VMS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 인증서 발급에서 가능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PDF 파일 저장과 프린터 출력으로 나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실적을 한 번에 출력 시 인증서발급(센터전체)을 이용해 주시고 개별실적 출력 시 실적 목록의 발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관공서, 도서관에서 해당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해당 기관들의 방화벽 차단으로 정상적인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봉사를 진행한 기관에 연락하시어 실적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요청 후 메일로 송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A 4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인증 칸에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법정대리인 인증은 14세 미만 자녀 휴대폰이 아닌 보호자의 휴대폰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및 이름란에 직접 입력이 아닌 휴대폰 인증 진행시 성명 및 휴대폰 번호는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보호자의 휴대폰 인증 완료 시 법정대리인의 관계란에 관계 기재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A 5 개명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2018년 1월 8일 VMS 개편으로 봉사자가 직접 홈페이지 상에서 개명절차가 진행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방법은 VMS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 인증으로 개명 진행 시 오류문구가 발생하는 부분은 실명인증기관의 정보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며 해당 문구 발생시 1600-1522 나이스 신용평가 전화 > 0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실명정보등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 6 영문 증명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영문증명서는 시스템 상 자동 발급이 어려우며 봉사하신 기관에 연락하시어 영문 증명서 발급 요청을 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영문증명서 위치 : VMS 홈페이지 > 알림정보 > 자료실 > 3페이지 38번 사회 봉사활동인증서(영문) 서식 이용 요망

Q A 7 회원 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 회원 탈퇴는 VMS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메뉴 확인이 가능하며 회원 탈퇴 시 봉사자의 모든 개인정보 및 봉사실적은 소멸됩니다. 더불어 소멸된 실적은 복구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여 회원탈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청소년 자원봉사 Dovo(두볼) 자주 묻는 질문

□ Dovo(두볼) 관련 문의

Q A 1 봉사활동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봉사활동 신청 취소는 [마이페이지]-[봉사활동 관리]-[봉사활동 신청내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취소의 경우 기관에서 활동 등록 시 설정해 놓은 신청 취소기간 내에는 취소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어 직접 취소가 가능하지만 신청 취소기간을 경과할 경우 사이트에서 취소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활동 상세정보에서 신청 취소 기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A 2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신청내역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처리가 되나요?

- 이미 활동을 한 봉사활동이 신청내역에 있다면 아직 기관에서 완료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일 완료 처리를 하는 기관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짧게는 1~2일, 기관 사정에 따라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완료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활동을 한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완료 처리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A 3

봉사활동 신청 가능 개수가 3개인데 저는 2개 밖에 신청이 안 됩니다. 신청 개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청 가능개수에 제한이 생긴다면 다음의 경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내역에 이미 활동한 봉사활동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신청목록에 남아 있는 경우
→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완료 처리를 요청해주시면 신청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2. 과거 봉사활동 불참으로 인한 신청 가능개수 차감되어 복구 되지 않은 경우
→ 과거 불참한 이후 봉사활동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개수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참여하면 차감된 봉사활동 신청가능 개수는 자동 복구됩니다.
※ 1회 불참→신청 가능개수 1개 감소→봉사활동 1회 참여→신청 가능개수 1개 복구
(신청 가능개수 총 3개)

Q A 4

봉사활동 신청 후 참여하지 않아 삼진아웃에 걸려 봉사활동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풀리나요?

- 우선 삼진아웃의 경우 3회 연속으로 불참하였을 경우 최종 불참처리 기준일로 부터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회~2회 불참까지는 다른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신청가능 개수를 복구할 수 있으나 3회를 연달아 불참하는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 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 A 5 봉사활동을 신청하려는데 학교급(초, 중, 고, 대, 학교 밖)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 봉사활동 기관이 모집하는 학교급과 회원정보의 학교급이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신청하고자 하는 봉사활동의 학교급을 확인한 후 본인의 학교급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보변경] - [부가정보]에서 학교급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단, 학교급을 변경하는 경우 학교 정보도 함께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Q A 6 로그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우선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소문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청소년 자원봉사 Dovol(두볼) 사이트는 대소문자 구분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그래도 안 되는 경우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비밀번호 찾기 시 만 14세 미만으로 가입했던 회원의 경우이거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경우 휴대전화 인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 인증을 통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Q A 7 e청소년을 장기간 미사용 했더니 휴면상태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요?

- 휴면해제는 휴면상태 안내 페이지의 개인 정보 인증을 통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휴면해제는 주민번호 인증 후 1회 로그인을 해야 휴면 해제가 완료됨)
다만, 청소년이 인증을 해야 할 경우라면 휴대폰 인증이 아닌 주민번호 인증을 통해 휴면 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Q A 8 회원 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제가 다니는 학교가 검색이 안 됩니다. 학교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학교가 신설하였거나 2개 이상의 학교가 통합된 경우, 또는 학교명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검색이 안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 [마이페이지]-[봉사활동 관리]-[봉사활동 참여내역]에서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관에서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봉사활동 영역이 기타활동으로 등록되어 출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출력 자체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e청소년 안내]-[설치프로그램]에서 리포트 뷰어와 위변조 방지 프로그램 설치
2. [e청소년 안내]-[게시판]-[공지사항]에서 ‘확인서 출력 시 오류 방법 안내’ 를 확인
3.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출력이 안 된다면 해당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문의 요망
(단, 개인정보정책에 의해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기는 프로그램 설치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활동 터전에서 하는 봉사활동과 동아리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활동 터전은 봉사활동 기관이라는 뜻으로 터전에서 등록한 봉사활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동아리의 경우는 동아리 회원만 해당 봉사활동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해진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만약 동아리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연락 하시어 회원 모집 시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연계 문의



11

1365 자원봉사포털로 Dovol(두볼)의 실적을 전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365 자원봉사포털로 Dovol(두볼) 실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우선 1365 자원봉사포털과 Dovol(두볼)에서 실적 연계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의 경우 [로그인]-[나의 자원봉사]-[회원정보 관리]-[자원봉사 활동 부가정보]-[봉사실적 연계를 위한 정보 제공 동의]에서 연계 동의를 해주셔야 하며, Dovol(두볼)의 경우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있는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 버튼을 통해 연계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초 1회 동의 후에는 봉사활동 실적(2016. 1. 1. 이후에 한 봉사활동 실적)이 자동으로 전송되며, 전송 소요시간은 시스템 상황에 따라 평균 1일~2일 정도 소요됩니다.

Q A 12

저는 Dovol(두볼)만 사용하는데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를 하려면 1365 자원봉사포털에도 가입을 해야 되나요?

-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시스템(나이스, NEIS)으로 실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포털과 연계를 해야 합니다.
연계하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Dovol(두볼)과 동일한 인적사항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Dovol(두볼)과 1365 자원봉사포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동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Q A 13

오래 전에 연계 동의하였는데도 계속해서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 활동 실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계 확인이 가능한가요?

○ 다음과 같은 사항은 몇 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 동일한 날짜에 Dovol(두볼)과 1365 자원봉사포털에 따로 신청한 봉사활동 시간이 겹치는 경우
(ex. Dovol(두볼) 10시~12시, 1365 자원봉사포털 12시~14시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12시가 겹치므로 시스템 상에서는 1건을 허위 봉사활동으로 인식) 실적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365 자원봉사포털에 아이디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전송이 안 될 수 있으므로 1365 자원봉사포털측에 문의하여 아이디 개수를 확인해 주시되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디는 삭제하신 후 연계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봉사활동 완료 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전송은 기관에서 완료처리 시점 이후에 전송이 시작되므로 이를 기관에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4. 1365 자원봉사포털에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로그인하여 [나의자원봉사]-[회원정보관리]-[자원봉사활동 부가정보]에서 동의해 주신 후 Dovol(두볼)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로 연계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사용하고 있는 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와 Dovol(두볼)에 연계 동의가 되어 있는 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가 다를 경우 전송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Dovol(두볼)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재 연계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Q A 14 Dovol(두볼)과 1365 자원봉사포털을 연계하면 나이스(NEIS)로 바로 넘어가나요?

○ Dovol(두볼)과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를 함으로써 나이스(NEIS)까지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스(NEIS)로 전송하려면 우선 Dovol(두볼)에서 전송된 봉사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한 후 1365 자원봉사포털 메인화면의 [자원봉사 실적 나이스 연계] 메뉴를 통해 나이스로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자동이 아니므로 직접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Q A 15 Dovol(두볼)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결과에 '수신'과 '전송불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우선 '수신'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하여 활동이 완료된 봉사활동 실적이 Dovol(두볼)로 전송된 경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수신'한 실적임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송불가'는 말 그대로 1365 자원봉사포털로 전송자체가 불가능한 봉사활동이며 이는 Dovol(두볼)에서 활동한 봉사활동의 영역이 해외봉사활동, 기타활동(봉사의 활동)인 경우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에서 인정되지 않는 활동이므로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봉사활동인데 '전송불가'라고 표시된 경우라면 활동한 기관 선생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A 16 오늘이 학교에서 봉사활동 실적 등록 마감인데 1365 자원봉사포털로 봉사활동 실적 전송을 바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 Dovol(두볼)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로 실적 전송은 자동 전송 시스템으로 정해진 시간에 1일치 봉사활동을 한꺼번에 1365 자원봉사포털로 보내고 있어, 바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급하게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Dovol(두볼)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한 후 학교에 직접 제출하면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수기로 나이스(NEIS)에 입력을 하실 수 있으므로 선생님과 상의 후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 A 17 봉사활동 실적 중 일부는 1365 자원봉사포털로 '전송성공'인데, 일부는 '미전송'입니다. 오류 사유는 무엇인가요?

○ Dovol(두볼)에서 1365 자원봉사포털 연계를 동의한 후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아이디를 변경하셨거나 시스템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만 전송이 되고 일부는 전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학생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인정 기준(예시)

1. 활동 세부 내용별 권장시간

【봉사활동 기관(단체)에서 활동영역 구분 기재 방법】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으로 구분하여 기재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이웃돕기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 보조(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6시간
		공동체 마을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 활동, 주민자치활동	4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4시간
		알뜰시장 및 벼룩시장 봉사활동	4시간
		지역사회 바자회	3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 활동	4시간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진흥	지역행사 지원활동	6시간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4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3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4시간
		문화체험, 취약아동 대상 수련활동 보조지도	4시간
	민주시민 사회구현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3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3시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민원안내, 업무보조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선거관련 봉사활동	4시간
		공공기관 내 민원 안내, 사무협력, 서가정리	3시간
		장애인 및 노인 민원 접수 보조 및 안내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3시간
		현혈자 접수 및 안내	4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4시간
		나들이 보조	4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노인 놀이, 말벗 봉사	3시간
		도시락, 밀만찬, 물품 배달	4시간
		급식소 봉사활동	4시간
		보육, 음식조리	4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4시간
	청소, 빨래, 주변 환경 정리	4시간	
식사보조	4시간		
목욕 봉사활동	4시간		
체육 보조 활동	4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4시간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행사 지원활동	4시간		

활동영역	세부유형	세 부 내 용	권장 시간
	일손 돕기 재능 나눔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4시간
		통·번역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장애우 점자입력 봉사활동(A4용지 10페이지 기준)	3시간
	교통 안전 활동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4시간
		교통안전교육 지도	4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지도활동 재능 나눔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등)	4시간
	위문공연 재능 나눔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4시간
		공연 봉사활동	4시간
	재난관리, 구호활동	피해복구활동	6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6시간	
피해지역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6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4시간	
재해예방교육 보조지도		2시간	
피해지역모니터활동	2시간		
환경보호활동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보호, 시설정비 활동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4시간
	환경감시	문화재지역 환경정화활동	4시간
캠페인 활동	의식개선 활동	환경 보호 모니터링	4시간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현혈 거리캠페인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캠페인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청소년유해업소 추방 캠페인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 캠페인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건강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1년 12시간 이내)	1시간	
현혈	현혈(1년 3회 이내)	4시간	
기 타			

[서식 1]

▣ 학생봉사활동 계획서 ▣

인적사항	학교 제 학년 반 번 성명 :
활동기간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총 ()시간 예정
활동장소	
확인기관	
활동내용	
<p>위와 같이 학생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학생 : 학년 번 성명 (서명 또는 날인)</p> <p>위의 학생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합니다.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p>	

※ 개인 봉사활동은 반드시 계획서의 학교 승인을 받고 봉사활동을 실행하여야 함
* : 학교장 확인은 단위학교의 전결 규정에 따라 처리함.

[서식 2]

▣ 학생봉사활동 확인서 ▣

인적사항	학교 제 학년 반 번 학생 성명 :
활동일시	시작일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까지 종료일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시 ()분 까지
횟수/시간	횟수 : 회, 시간 합계 : 시간 분
활동장소	
활동내용	
평가의견	
<p>위와 같이 학생봉사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p> <p>확인 기관명 : (직인) 확인기관 전화번호 : 확인자 직책(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서식 3]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단체봉사활동 실시 확인서									
단체봉사 구분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 / 정규교육과정 외의 봉사활동 ()								
인적 사항	○○초·중·고등학교 학년 반 성명 : ○○○ 외 명(총 명)								
봉사활동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봉사활동 기관	○○초·중·고등학교	기관 연락처							
봉사 영역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봉사활동 참여자 명단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학년	반	번호	성명	인정시간
1					18				
2					19				
3					20				
4					21				
5					22				
6					23				
7					24				
8					25				
9					26				
10					27				
11					28				
12					29				
13					30				
14					31				
15					32				
16					33				
17					34				
위 학생들은 위와 같이 단체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직위 ○ ○ 성명 (인)									
확인기관명 : ○ ○ 초·중·고등학교장 (직인)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실적 인정시 사용

[서식 4]

헌혈 학부모동의서·사후 확인서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인적 사항	○○고등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헌혈 일시	20 년 월 일, 총 ()시간					
헌혈 주관 기관						
봉사 영역	캠페인활동					
활동 내용	헌혈(전혈) () / 헌혈(성분헌혈) ()					
위와 같이 자녀의 헌혈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부모 성명 : (인)						
○ ○ 고등학교장 귀하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서식 5]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개인형)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초·중·고등학교 ()학년 ()반 ()번 성명()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주관 기관						
봉사 장소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 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 ※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진로 및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 ※ 위의 서식은 학교별로 적절하게 변경 가능하며 참고용입니다.

[서식 6]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계획서 (모듬형·융합형)		결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프로젝트명						
인적 사항	학 번	성 명	비 고	학 번	성 명	비 고
활동 기간 및 시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총 ()시간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						
차시	활동일시(월/일)	봉사활동 영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주관기관	봉사 장소
1						
2						
3						
4						
5						
6						
7						
8						
9						
10						
위와 같이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 (인)						
○○중·고등학교장 귀하						

- ※ 모듬형 또는 융합형에 따라 인적사항 비고란에는 학생대표, 학부모, 교사로 표시하세요.
- ※ 활동 동기 및 활동 목표는 진로 및 특기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 결재란은 예시이므로 학교 전결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세요.

[서식 7]

□ 20 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회의록(예시)

0000학교

회의일시	20 . 03. 00. 14:00	회의 참석자	위 원 장 : 교감 000 부위원장 : 부장 000 위 원 : 000, 000, 000, 000, 000, 000
회의장소			
회의안건	20 학년도 1학기 교내 봉사 활동 프로그램 심의 및 의결		
			기록 : 0 0 0
회 의 내 용			
회의안건			
회의내용			
의결내용			